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바뀌면 환급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지급정지와 환급은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처벌은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수법을 환급의 재원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켜 산정한다.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인출되면 소멸시킬 채권이 남지 않는다. 같은 계좌의 명의인에게는 접근매체를 넘긴 데 대한 형사처벌이 남는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0일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내는 수법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항목	값	비고
소비자경보 등급	주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2026.8.10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	1 회·1 일 100 만원으로 인하	발표 자료에 적힌 예방조치
접근매체 양도·양수 벌칙	5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명의인 채권 소멸 시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 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9 조 제 1 항
환급금 결정 기한	채권 소멸일부터 14 일 이내	같은 법 제 10 조 제 1 항
보이스피싱 피해 증감	발생건수와 피해액 각각 35.3% 감소	국무조정실 2026.5.27, 2025.10~2026.4 전년 동기 대비

발표 자료는 사기범이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해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받아낸 계좌는 대환대출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쓰였다. 그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했다. 자료는 이를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으로 적었다.

같은 자료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실렸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뒤따랐다.

대응으로는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를 1 회·1 일 100 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 적혔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함께 적혔다. 이미 카드를 넘겼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안내도 담겼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 2 조 제 4 호는 사기이용계좌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그 자금이 다시 이전된 계좌로 정의한다.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한다. 제 9 조 제 1 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 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 2 조 제 6 호는 피해환급금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제 10 조에 따라 산정한 금전으로 정의한다. 환급의 재원은 계좌에 남아 있는 명의인의 채권이다.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인출되면 소멸시킬 채권도 그만큼 줄어든다. 제 10 조 제 2 항은 피해액 합계가 소멸채권액을 넘으면 소멸채권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을 곱한다고 규정한다. 소멸된 채권이 없으면 곱할 금액도 없다. 이 법에 상품권이나 그 소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은 없다.

상품권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이번 발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 또는 그 정보다. 발표 자료는 키오스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형태를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년 9 월 16 일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 곳의 약관을 심사해 85 개 조항을 시정했다. 그때 쓰인 수단도 개별 법률이 아니라 약관 심사였다.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이다. 제 1 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한다. 제 2 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한다. 제 3 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한다. 대가와 범죄 인식은 제 2 호와 제 3 호의 요건이고 제 1 호에는 없다. 제 49 조 제 4 항은 제 1 호 위반에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사기범이 내건 조건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상품권 구매 기록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고, 대환대출 자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와야 한다. 발표 자료는 둘 다 제도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대환대출은 2023 년 5 월 31 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인프라에서 금융회사 사이로 처리된다. 심사에서 거절된 경험이 쌓일수록, 모르는 심사 항목이 따로 있다는 설명은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 수법에는 두 사람이 나온다. 대환대출 안내를 받고 자기 돈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다.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은 계좌 명의인이다. 명의인도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제 1 호의 적용에서 그 사정은 요건이 아니다.

명의인에게 생기는 일은 셋이다. 첫째는 계좌 전부의 지급정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4 조 제 1 항은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는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이다. 같은 법 제 13 조의 2 는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가운데 일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금융감독원이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셋째는 형사처벌이다. 법정형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의제기는 제 7 조에 있다. 사유는 두 가지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하나다.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둘 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사정은 두 사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카드를 건넨 날에는 계좌에 아무 변화가 없다. 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시점은 대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구매한도 인하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루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명의인 수와 구매 날짜를 늘리면 같은 총액이 나온다. 발표 자료에 명의인 모집 자체를 줄이는 항목은 없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재원은 소멸된 채권이다. 계좌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인출된 뒤에는 이 법에 상품권이나 그 소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없다. 회수는 형사 절차에 남는다.
- 제 7 조의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재화·용역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 두 가지다. 대출을 받으려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를 다루는 항목은 없고, 소명 기한도 공고일부터 2 개월로 같다.
- 구매한도 인하가 어느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근거하는지, 어떤 판매 창구에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가 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대출 상담에서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제 1 호는 대가나 범죄 인식이 없어도 접근매체 양도와 양수를 금지한다.
- 이미 넘겼다면 오늘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함께 한다.
- 대출 권유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그 회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대환대출에는 개인 계좌 입금 요구가 없다.

금융회사

-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같은 사람이 반복 구매한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한도 금액만으로는 반복 구매 자체가 걸려지지 않는다.
-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절 통지 문안에 함께 적는다.

당국

- 구매한도 인하와 별개로, 계좌 잔액이 상품권으로 바뀐 뒤의 환급 재원을 다루는 조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있는지 점검한다.
- 속아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이 제 7 조 이의제기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소비자경보와 함께 안내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 인하와 관계기관 협의가 어떤 형식으로 확정되는지. 발표 자료에 적힌 것은 예방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다.

A 로 가면 · 판매사업자의 자율 조치로 확정되면 한도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판매 창구가 남는다.

B 로 가면 · 법령이나 감독규정으로 확정되면 적용 범위는 같아진다. 다만 상품권으로 바뀐 금액의 환급 재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후속 발표문에 근거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조문이 적히는지, 아니면 사업자 협약과 자율규제로 적히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여신거래 안심차단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상품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체크카드 대환대출(갈아타기)
금융사건	20 번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 억원 모르는 돈 1 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 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 억원을 먼저 보냈다
피해 구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 무료로 도움받는 법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금융감독원 2026.8.10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 차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 2 팀 발표 원문 전제(KDI 경제정보센터). 발표일 2026.8.10(월), 경보 등급 '주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17
수법 — 저신용 서민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체크카드·통장을 받아내고, 대환대출 피해금 입금에 이용한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	1 차	위 동일. 원문 표현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17
"피해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1 차	위 동일. 소비자 유의사항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17
예방조치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를 1 회·1 일 100 만원으로 인하"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계획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1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 — 제 4 호 사기이용계좌 (피해자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교부·인출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 제 5 호 피해금액, 제 6 호 피해환급금(제 9 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제 10 조에 따라 산정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조문 원문 확인. 제 6 호 원문 "money paid by a financial company to a victim, which is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 based on a claim extinguished pursuant to Article 9"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75
제 4 조 제 1 항 —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1 차	조문 원문 확인. 원문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to suspend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통보 등이 있으면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payments on all of such account exploited for fraud"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81
제 9 조 제 1 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 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 (2023.5.16. 개정)	1 차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87
제 10 조 제 1 항 —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부터 14 일 이내에 피해환급금 수령인과 금액을 결정한다. 제 2 항 — 피해액 합계가 소멸채권액을 초과하면 소멸채권액에 각 피해자 피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 차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88
제 7 조 — 명의인은 지급정지 시점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재화·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1 차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85
제 13 조의 2 제 1 항 — 지급정지 조치를 받거나 통지받은 명의인에 대해 일정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	1 차	조문 원문 확인. 원문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designate the relevant holder of the title as a person for whom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restricted"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023&cseq=1789192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 제 1 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금지(대가·범죄 인식 요건 없음), 제 2 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제 3 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제 4 호 질권 설정 금지, 제 5 호 제 1 호~제 4 호의 알선·중개·광고·권유 금지	1 차	조문 원문 확인. 제 1 호 원문 "Transferring or taking over a means of access" — 대가 요건은 제 2 호, 목적·인식 요건은 제 3 호에만 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18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 제 6 조 제 3 항 위반에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차	조문 원문 확인. 원문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fiv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78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앞의 수단에 필요한 비밀번호. 제 14 호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자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 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될 것	1 차	조문 원문 확인. 발표 자료가 키오스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형태를 적지 않아 이 정의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본문에도 그대로 적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12
"'25.10~'26.4 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 감소"	1 차	국무조정실 2026.5.27 발표 원문 전제. 원문 문장 그대로이며 절대 건수·금액은 자료에 없어 쓰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739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2023.5.31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기업과 2023.5.30 발표 원문 전제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이용 개시 —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을 조회해 알아탈 수 있는 서비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9112
공정거래위원회 2025.9.16 —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 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 개 유형 85 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1 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5.9.16 발표 원문 전제. 원문 문구 "총 7 개 유형의 85 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1123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83 자	16 건	16 건 (100%)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 인하가 법령·감독규정으로 확정됐는가, 사업자 자율 조치로 남았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계좌 밖으로 인출된 자금의 환급 재원을 다루는 개정이 있었는가.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가 늘었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